

##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NH농협은행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(02)2080-3718, 3719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우리 프런티어 법인용 MMF제3호(국공채)
- 나. 분류 : 증권집합투자기구(단기금융(MMF), 일반형, 추가형, 개방형)
- 다. 보관·관리기간 : 2011-11-14 ~ 2012-11-13
- 라. 집합투자업자 : 우리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: 메리츠종합금융, 부국증권, HMC증권, 하나대투증권, 엘아이지증권, 전북은행, 우리증권, 하나IB증권, 유화증권, 골드브릿지증권, 동부증권, 한화투자증권, 바로투자증권, 흥국증권, 한화생명보험, 금호생명보험, 교보증권, 하이투자증권(구 CJ투자증권), 토러스투자증권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한투증권(구동원증권), 한맥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코리아IB증권, 외환은행, 삼성생명보험, 한화투자증권, 삼성증권, 미래에셋증권, 리딩투자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(IBK증권), 케이티비증권(KTB), 부산은행, 수협중앙회, 신한금융투자(구굿모닝증권), 신영증권, 한양증권, 현대증권, 아이엠투자증권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금호종합금융, 대신증권, 유진투자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SK증권, 금호종합금융, 대우증권, NH농협증권, 케이비투자증권(구한누리), 애플투자증권, BNG증권중개, 우리은행, 홍콩상하이은행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: 해당사항없음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: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: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: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교체·해임에 관한 사항

(단위 : 원)

선임일자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2010-07-01	대주회계법인	2년	5,500,000	서면계약

- 상기 감사보수는 "미지급감사보수"로 실제 지급금액은 변동될 수 있고, 회계감사 종료 이후 지급될 예정임
- 상기 감사보수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.

### 7.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: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: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: 적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: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: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: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: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 - 우리자산운용(주)의 준법감사인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거 집합투자재산별 자산배분내역의 적정성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#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,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또는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종료(결산)에 따라 작성 제공됩니다.